

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등은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사업인가 후 조합원 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거가 없어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승계에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전액 과세하게 됨에 따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였다.

7)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신설(법제111조제6항·제8항)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에 명시하였으며, 시행령 제81조의2에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8) 면허세 관련규정의 정비(법제160조·제161조·제165조·제167조, 영제124조·제126조의2·제127조·129조, 별표)

개정 지방세법 제160조에서는 종전의 지방세법에서 면허로 정의하고 있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는 강학상 또는 실정법상의 용어와 상이할 수 있어 부적절한 점이 있으므로 면허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 재정립하였으며,

법 제161조에서는 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